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용

1. 대상 투자신탁: 삼성밀당다람쥐글로벌 EMP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2. 정정 사유: 환매주기 단축,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
3. 정정 신청일 [효력발생일(예정)]: 2026.11.13 [2026.11.20]
4. 정정 요구・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
5. 정정사항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7 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집합투자업자・신탁업자・판매회사가 법령・신탁계약・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,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 8 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17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(법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“수익증권”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17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(법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“수익증권”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.
제 18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·판매가격, 판매수수료 등)	⑪ *<신설>*	⑪ 집합투자업자는 고객이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
제 19 조(환매청구 및 방법 등)	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	⑤ *<삭제>*
제 20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	②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	제 9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10 영업일)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제 6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7 영업일)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 23 조(수익증권의 환매제한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 영업일 전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8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4 영업일 전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제 5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제 49 조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(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	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(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(법 시행령 제 262 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
부칙	(추 가)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 년 11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.(환매주기 단축,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)